

#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8. 28.

춘천시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시험포지 조성공사

나. 위 치: 춘천시 중도동 872-3 일원

다. 사 업 량: 시험포지 조성 5,743㎡ (세부내역: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17,685,000원

– 도금액: 금142,130,000원(추정가격: 금129,209,091원, 부가가치세: 금12,920,909원)

– 도급자설치관금액: 금75,555,000원

\* 관급자설치관금액: 금51,809,000원

바. **기초금액: 금142,130,000원**

사. 공사구분 / 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 09:00 ~ 2026. 9. 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 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등록기준 판단 서류요구시 기술능력 보유 증빙서류(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등)와 자본금 증빙서류(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별도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pm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가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 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약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사업명 기재),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                   |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b>1,431,385원</b> | <b>1,891,260원</b> | <b>188,083원</b> | <b>915,768원</b>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b>합계</b>         |
| <b>3,023,179원</b> | -                 | -               | <b>7,449,675원</b> |

##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15. 기 타

-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3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녹지정원과 정원개발팀 강병찬(☎033-250-4548)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세현(☎033-250-304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 250-3041), 감사담당관실(☎ 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http://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준·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준·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checkmark$  표시를 합니다.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15
16
17

(서명 또는 인)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